

[별지 1]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따른 퇴직보상금 산정 기준

근로계약 해지 사유	기준	변경(신설 또는 완화된 사항 있음)
회사 합병, 형태 변경, 인수 등으로 근로자가 해지 요청 시	- 해고보상금 x 1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	- 해고보상금 x 1 또는 x 0.5(인수의 경우)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회사 합병, 형태 변경, 인수 등으로 사용자가 해지 요청 시	- 해고보상금 x 2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	- 해고보상금 x 1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2년 이상 지속 적자로 인한 폐업의 경우	- 해고보상금 x 1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	- 해고보상금 x 0.5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	- 해고보상금 x 1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	- 해고보상금 x 0.5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회사 구조조정(경영 합리화)의 경우	- 해고보상금 x 2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	- 해고보상금 x 1 (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) 또는 x 2 (손해 방지를 위한 경우)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손해 또는 불가항력 외의 다른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	(규정 없음)	- 해고보상금 x 1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폐업에 이르지 않는 불가항력 사유	(규정 없음)	- 해고보상금 x 0.75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회사의 PKPU 절차 개시	(규정 없음)	- 해고보상금 x 0.5 (손해 발생의 경우) 또는 x1 (그 외의 경우)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파산의 경우	- 해고보상금 x 1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	- 해고보상금 x 0.5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근로자 사망의 경우	- 해고보상금 x 2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	- 해고보상금 x 2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정년퇴직의 경우	- 해고보상금 x 2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	- 해고보상금 x 1.75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
근로계약 해지 사유	기존	변경
질병 등으로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	- 해고보상금 x 2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	- 해고보상금 x 2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아래와 같은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로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a. 학대, 모욕, 협박 b. 범법행위 지시 c. 3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 d. 의무사항 미이행 e. 계약상 업무 외 지시 f. 생명, 안전, 보건, 도덕을 위협하는 업무 지시	- 해고보상금 x 2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	- 해고보상금 x 1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	- 손해보상금 - 전별금	- 손해보상금 - 전별금
자진 퇴사 또는 5일 이상 무단 결근의 경우	- 손해보상금 - 전별금	- 손해보상금 - 전별금
근로계약, 사규, 단체협약의 규정 위반으로 3회 경고장을 받은 경우	- 해고보상금 x 1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	- 해고보상금 x 0.5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
근로계약, 사규, 단체협약 규정의 중대한(긴급한) 위반의 경우	- 손해보상금 - 전별금	- 손해보상금 - 전별금
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6개월이 경과하거나 유죄 판결이 난 경우	- 근속보상금 x 1 - 손해보상금	a.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6개월이 경과하거나 유죄 판결이 난 경우 - 손해보상금 - 전별금 b. 회사와 무관한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6개월이 경과하거나 유죄 판결이 난 경우 - 근속보상금 - 손해보상금